

## 부천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221호
의결년월일	2004. 1. 16 (제110회)

제안년월일 : 2004년 1월 8일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### □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(2003. 7. 18) 및 동법시행령(2003. 12. 18)개정으로 지방의원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조정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골자

가. 매월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의 구분 및 인상

현행		변경		
계	의정활동비	계	의정활동비	
			의정자료 수집·연구비	보조활동비
550,000원	550,000원	1,100,000원	900,000원	200,000원

나. 의원의 국외여비지급 범위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 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 함.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□ 기타 참고사항 :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

##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의정활동비는 매월 550,000원”을 “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수집·연구비 900,000원과 보조활동비 200,000원”으로 한다

별표 2중 의장·부의장 및 의원의 숙박비(1야당)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숙 박 비 (1야당)
의장·부의장	가등급 166
	나등급 120
	다등급 92
	라등급 79
의 원	가등급 145
	나등급 95
	다등급 70
	라등급 62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	
제2조(의정활동비) ①(생략) ② 의정활동비는 매월 550,000원으로 하 고 부천시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		제2조(의정활동비) ①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 수집·연구비 900,000원과 보조활동비 <u>200,000원</u> -----	
[별표 2] 국외여비지급기준표 (단위 : 미불화)		[별표 2] 국외여비지급기준표 (단위 : 미불화)	
구 분	숙 박 비 (1야당)	구 분	숙박비 (1야당)
의장·부의장	<u>가등급 151</u> <u>나등급 109</u> <u>다등급 84</u> <u>라등급 72</u>	의장·부의장	<u>가등급 166</u> <u>나등급 120</u> <u>다등급 92</u> <u>라등급 79</u>
의 원	<u>가등급 132</u> <u>나등급 86</u> <u>다등급 64</u> <u>라등급 56</u>	의 원	<u>가등급 145</u> <u>나등급 95</u> <u>다등급 70</u> <u>라등급 62</u>